

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성된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(안 제1조).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국가연구데이터 생산·관리 및 활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).
-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 구축·운영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10조, 제11조 및 제16조).
-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·제출하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데이터를 생산·보유 및 관리하도록 하며,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과 연계된 저장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).
- 연구개발기관은 보유·관리 중인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연계하도록 하되,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식별 정보를 등록하거나 연계하도록

함(안 제18조).

- 국가연구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,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자료, 경영상·영업상 비밀 등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 및 제23조).
- 활용자에게 국가연구데이터 제공 소요 실비 납부 및 출처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, 국가연구데이터의 추가적 가공·편집·결합·연계 등을 통한 경제적 가치 추구 등 결과물의 활용 근거를 마련함(안 제24조 및 제25조).
-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·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6조 및 제32조).
- 국가연구데이터센터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, 위반시 벌금 및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게 함(안 제27조, 제30조 및 제31조).
- 이 법 시행 후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하도록 하되,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함(부칙 제2조 및 제3조).

II. 검토의견

-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, 안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준용되는 규정의 범위를 명확¹⁾하게 하고, “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” 및 “국가연구데이터” 등 법문에 사용된 용어를 통일하며, 구체적인 법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임입법 근거를 추가²⁾하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혜 진)

-
- 1) 안 부칙 제2조는 이 법을 이 법 시행 이후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다만, 안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위해 제19조제3항(등록·연계된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준수 의무 부여 및 시정 등), 제20조제2항(국가연구데이터 품질진단 정기 실시 및 결과 공표), 제22조(국가연구데이터 공개 원칙), 제23조(국가연구데이터 예외적 비공개), 제24조(국가연구데이터활용자의 비용 부담 등),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(국가연구데이터 활용 촉진) 및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(분쟁조정, 비밀유지의무, 업무 위탁, 벌칙, 과징금, 면책)를 준용하고 있음. 다만, 안 부칙 제3조 단서에서 열거하고 있는 위 준용조항 중 제19조제3항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국가연구데이터의 생산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, 해당 연구개발기관 및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에게 사후적으로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이미 완료된 과제를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.
 - 2) 안 제26조제4항은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·활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」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으나,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행정입법(대통령령)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.